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895
----------	-------

발의연월일 : 2025. 11. 4.

발 의 자 : 박해철 · 이훈기 · 이연희
박홍배 · 박 정 · 송옥주
권칠승 · 김남희 · 김주영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와의 상시 논의기구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심의하기 위해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과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의 검토 및 심의 보조를 위한 전문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등).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8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일터 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1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 (안전한 일터 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한 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8조의2(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공표) ① (생 략)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공표)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 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 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제7조의 2제1항에 따른 안전한 일터 위 원회----- ----- -----. -----.
<신 설>	제7조의2 (안전한 일터 위원회)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제4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안전 한 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 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

<u><신 설></u>	<u>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u> <u>④ 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58조의2(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법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u>
---------------------------	--